

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(제45조 관련)

구 분		자 격 기 준
심사경력		최초보안심사·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
기본 자격	기본 경력	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자 가. 해양수산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선박의 항해, 기관 또는 운항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항해 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 나.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. 가목과 나목의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	교육 경력	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모두 받은 자 가. 「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」의 내용: 7시간 나.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·이행과 승인요령: 7시간 다. 선박보안평가와 선박보안심사 요령: 7시간 라. 선박 및 항만 보안시설·설비의 운용·관리: 4시간 마. 선박보안 일반: 3시간

비 고

1. 보안심사관은 3년 단위로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을 포함한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최초보안심사·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여 보안심사경력을 유지하여야 한다.
2. 제1호에 따른 보안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보안심사관은 교육 경력란의 교육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은 각 2시간 이상, 라목 및 마목의 교육은 각각 1시간 이상, 총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, 3년 이내에 최초보안심사·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중 어느 하나 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